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10 / Oct. 2017

10

기획 특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재정 논단

인구고령화와 소득재분배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재정이슈포커스

우리나라 국채 발행시장 제도변화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페가드레일을 활용한 적사함 자체 제작
박황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나라재정 배움터
지방재정조정제도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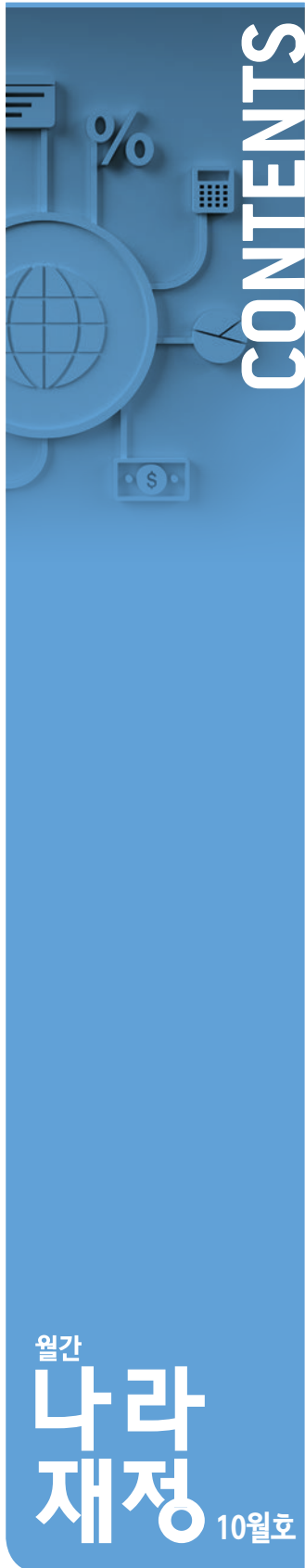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10 / October. 2017

기획 특집 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재정 논란 14

인구고령화와 소득재분배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재정이슈포커스 24

우리나라 국채 발행시장 제도변화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2

폐가드레일을 활용한 적사함 자체 제작

박형수 익산시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나라재정 배움터 42

지방재정조정제도

해외 재정 동향 4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6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hohojoong@korea.kr

SPECIAL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hohojoong@korea.kr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 최종확인 후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1. 피해 발생 경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넣는 물에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1994년 최초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35개 제품이 판매(2000년 이후 연평균 60만여 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소비가 증가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인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다가,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이 밝혀졌으며,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1월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된 화학물질인 PHMG, PGH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수거명령을 내렸고, CMIT/MIT 원료물질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는 판매중지를 권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환경부는 2012년 9월과 2013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PGH,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하였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 시 보고 및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3. 5월 공포, '15. 1월 시행)하였다.

2. 피해조사판정과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부터 가슴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사례를 접수하였고, 2012년 12월 의학, 환경보건, 독성,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폐 손상 조사위원회(위원장 백도명 서울대교수, 최보울 한양대교수)'를 구성·운영하였다.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61명에 대한 개인별 피해를 조사·판정하였다.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판정업무를 이어받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차, 3차 피해조사 신청 921건을 접수하여 2017년 8월 현재 826명에 대한 개인별 피해조사와 판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검찰사로 가슴기 살균제 제조업체에서 2011년의 정부 동물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실시한 동물실험의 신뢰성이 실추되면서 피해접수를 상시접수로 전환하였으며, 접수건수도 2016년 한 해에 4천 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제3차 접수자와 제4차 접수자(4,059명) 중 1,009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하였으며, 피해판정병원을 1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2016년 접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조사·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접수자는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가슴기 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폐섬유화)에 한정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태아피해 42명을 조사·판정하여 17명이 태아피해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9월 제2차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중증 천식을 3번째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는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간질성폐렴, 호흡기질환, 폐 이외의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실험 등 다양한 실험과 연구도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관련성이 입증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과학적 인과성이 확인되면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해 나갈 계획이다.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가
증가할 전망**



2017년 2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3. 피해자 지원대책 및 제도 마련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기업과의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원인기업에 대해 구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지원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14. 3. 13 시행)하였으며,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14. 4. 11 시행)하였다.

2016년 7월에는 “가습기 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10월까지 9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정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7개의 의원 입법 제안되었고, 이를 병합심의하여 2017년 2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에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급여 지급,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 살균제보건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1,250억 원 조성)을 활용하여 사업자 부도 또는 사업자 미상으로 인

해 원인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부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강피해 신청자에게 정부 구제급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며, 긴급의료비(3천만 원 이내)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다.

4. 피해자 지원 내용 및 절차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슴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를 2014년 4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 상정하여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폐섬유화 1, 2단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책(‘13. 8월)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가능성 낮음’ 판정(폐섬유화 3단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후 검찰 수사로 피해자 신청이 급증한 이후 폐섬유화 1, 2단계 피해자에게 생활수당과 간병비가 추가되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기존의 요양급여(의료비), 장의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외에 특별유족조위금과 구제급여조정금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최저구제급여액이 6.3백만 원에서 37.8백만 원으로 6배 증가하였다.

**사망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최저 구제급여액이
630만 원에서
3,780만 원으로 6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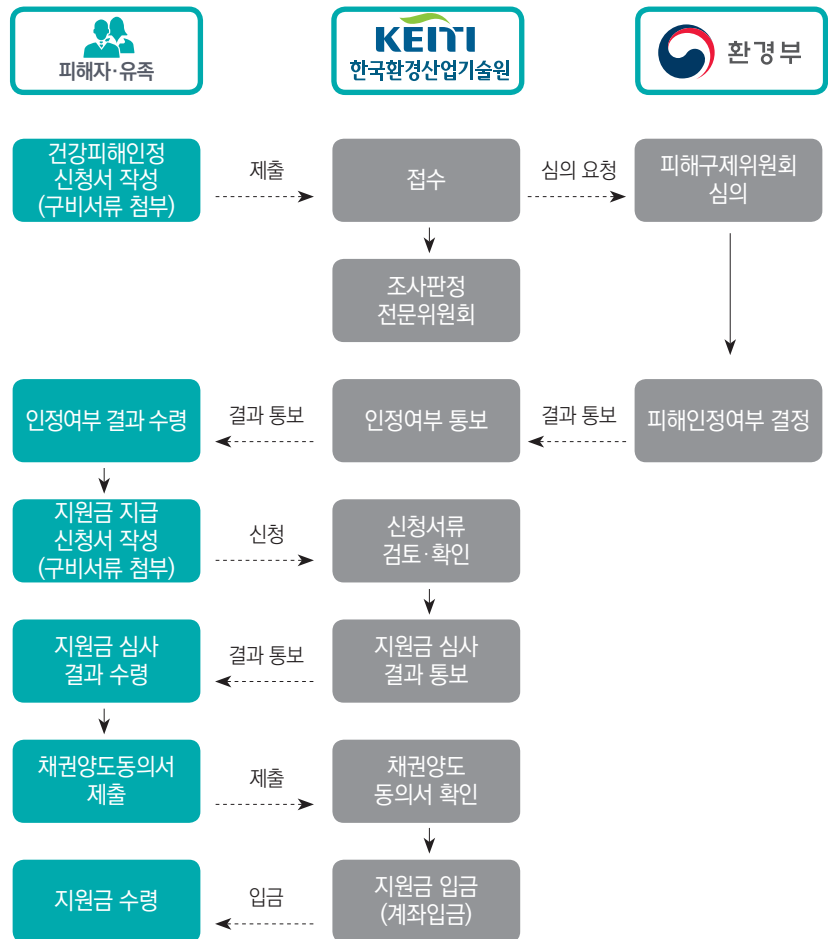
〈표 1〉 피해자 지원 항목의 변화

법 시행 이전	법 시행 이후	지원 내용
의료비	⇒ 요양급여	●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치료 비용
생활자금	⇒ 요양생활수당	●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등급에 따라 지급 ● 피해인정 신청 다음 달부터 소멸 시까지 월 단위 지급
장례비	⇒ 장의비	●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대상 ● 중위소득(2인가구 기준)의 1000분의 897 금액 지급
간병비	⇒ 간병비	● 일상생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간병등급 기준으로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신청 후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 ● 장의비의 15배 금액을 피해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간병비' 간 차액 보전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폐 손상(폐섬유화), 태아노출 피해, 중증 천식을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의료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경산업기술원에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채권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그림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절차

피해자가 환경산업
기술원에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채권양도 및
양수절차를 밟아
구제급여 받게됨



한편 피해구제계정에 의한 지원은 피해구제계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강피해인정 신청자에게 실시된다. 현재 긴급의료지원(3천만 원 이하) 규정이 마련되어 3명에게 지급하였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폐섬유화 3단계 피해자를 중심으로 심의하

고 있다. 또한 세류 등 부도기업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의 배상금과 현저히 차이 날 경우에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하고 있다.

5. 맺음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및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물질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려제품, 전기용품, 비관리제품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는 제품, 위해도가 높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7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에서는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 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는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위반 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사고였기에 전문가들도 건강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인과성 입증에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독성) 정보 확보를 위한 투자와 우리 주변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위반 제품, 위해도가 높은 제품을 퇴출시켜나감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4 / 인구고령화와 소득재분배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mjaesung@hongik.ac.kr

OPINION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mjoesung@hongik.ac.kr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

인구고령화와 소득재분배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흔히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산한 국민들의 총 부담을 GDP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OECD(2016)에 의하면, 201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총합) 수준은 평균 34.2%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5.2%)와 칠레(19.8%)에 이어서 3번째로 낮다. 그나마 미국과 스위스의 조세부담률이 각각 25.9%와 27.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국민부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하고 조세수입만을 고려하면, 201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멕시코(12.0%)와 슬로바키아(17.9%)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조세는 오랫동안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왔다. 직·간접세의 구분은, 법률형식상의 납세의무자와 명의상의 담세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대신 소득세원, 소비세원, 재산세원 등 세금의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적 의미의 귀착(incidence)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직·간접세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세금의 원천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직·간접세 분류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주요 세원별 GDP 대비 세수 비중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이 3.2%(2014년)에 이르러, 노르웨이(6.6%), 호주(4.7%) 등에 이어 7번째로 비중이 높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4.0%로 칠레(1.4%), 슬로바키아(3.0%), 멕시코(3.0%), 체코(3.6%) 다음으로 낮다. 이에 반해 덴마크(26.8%), 아이슬란드(13.6%), 핀란드(13.4%) 등은 극단적으로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다. 그 밖에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은 OECD 평균이 9.1%(2014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6%로 상당히 낮다.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4.2%)가 6번째로 낮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로, 미국(주 판매세)과 일본(8%) 등 일부 국가 다음으로 세율수준이 낮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총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세수 비중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여타 OECD 회원국보다 크게 낮은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그렇지만 법인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들 두 요소가 소득과세(세원)의 핵심적 원천들이다. 이들을 합산하면 총조세수입 대비 소득과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세원의 경우에는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반대로 개별소비세제의 의존도(비중)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 소비세원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과 비슷하다.

재산과세(세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원 비중이 11.0%로 OECD 평균(5.6%)의 약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의 보유자산 구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 중에서 산악지대 등을 제외한 가용국토면적 비율이 낮으며 지가·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득 대비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산세 부담률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밖에 가계의 자산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산과세의존도(비중)가 높게 나타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상대소득분배격차는 완만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명재(2016a)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추정 한 바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소

**최근 한국 가계의
상대소득분배격차는
점차 확대**



**인구고령화 현상이
소득불균등도를 확대
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소득빈곤
문제를 심화**

득불균등도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행하였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균등도의 확대추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상대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매우 극심하게 나타났다. 다행히 경제위기를 극복한 직후 기간(즉 1999년)에는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이후 지니계수가 계속 확대되면서 소득불균등도의 확대추세가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성명재·박기백(2009)은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이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요인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인구고령화 효과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성명재(2015)는,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가구는 대부분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시기(연령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계층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가구가 저소득·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요약하면, 인구고령화가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령 은퇴로 인해 시장소득이 감소하면 고령자의 소득회복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소득이동성 또는 계층이동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단순히 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빈곤의 장기화·고착화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분배격차의 확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말~1980년대부터 이미 소득분배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술편향적 발전(skill-biased development)이라는 전통적 견해도 있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시장소득의 분배격차 확대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명재(2011)는 소득계층별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자산, 부채의 구성 비율을 추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계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일수록 비중이 크고,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비중이 큰 것이 주된 특징이다. 노년가구의 점유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1~2분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시장소득의 점유비가 낮고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포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노인가구로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자산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성명재(2011)에 의하면 소득계층별·소득종류별 소득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자산유형별 자산보유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계층별 자산의 보유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다. 소득분포의 결정요인과 자산분포의 결정요인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소득세부항목과 자산세부항목의 분포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은 주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기타 부동산(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은 각각 10~20% 수준에 이른다. 가계의 부채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분배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남

대부분 금융부채(약 60% 수준)와 주택·상가 등의 임대 대가로 수취한 전세 보증금(약 30%)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자산보유액도 함께 증가하여 소득과 자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점유 비보다 자산점유비가 작은 분포특성을 지닌다(성명재, 2011). 그런데 자산분포구조가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소득탄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분포 탄력성이 1보다 작아 소득역진적인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는 일부 세목(재산세 등)에서 누진과세되고 있지만, 재산세제의 누진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는 분포적 특성을 지닌다.

흔히 세 부담의 누진도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성명재(2016b)는 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 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누진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얼마나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세금부담의 절대크기와 관계없이 상대비율만으로 누진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계층별 세 부담액의 상대적 차이뿐만 아니라 세금의 절대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첫째, 세 부담의 누진도가 높아 세금의 상대분포 차이는 크지만 세금의 절대액이 작으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둘째, 반대로 세금의 절대액이 크더라도 누진도가 작다면 역시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을 수 있다. 셋째, 누진도와 세금 규모가 모두 작은 경우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이 가운데 첫째 경우에 해당된다. 전통적으로 세 부담의 누진도 강화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후상박식 소득세 개편이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 면세자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세 부담의 누진도도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OECD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소득세의 세수 비중(규모)이 낮아지는 결과를 동반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세 부담의 누진도는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세 부담의 누진도가 높아도 세

한국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수규모가 작으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저해한다.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세 부담의 누진도를 높이지만 세수규모를 축소시킨다. 현재의 소득세 부담구조에서 소득공제를 하향조정하면, 면세자 비율과 누진도가 함께 낮아지는 대신, 소득세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된다(성명재, 2016b).

최근 실증연구를 통해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주로 복지 및 교육지출 기준)의 소득계층별 귀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명재(2016a)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일반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와 소비세, 각종 사회보험료를 분석대상 세목으로 하고, 현금 형태의 공적이전소득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공공부문의 복지지출과 교육서비스의 가치를 현금화한 현물급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부담·수혜(taxes and benefits)의 귀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가구당 평균 조세부담은 765.4만 원, 평균 수혜액은 792.1만 원으로 추정된다. 1~6분위의 저·중소득층은 수혜액이 부담액보다 많은 순수혜가구, 7분위는 균형가구,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부담액이 더 많은 순부담가구로 추정·분류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순부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누진분포구조를 지닌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부담·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면 15.0% 정도로 추정된다. 항목별로는 현물급여(4.72%p), 공적연금(4.53%p), 소득세(3.31%p), 기타 사회보장수혜(1.55%p) 등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반면에 소비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0.29%p로 추정되어, 소득분배격차를 소폭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지만 절대크기는 상당히 작다.

소득분배구조 및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자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세원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심각한 위협 요인 중 하나다. 저출산·인구고령화와 함께 인간수명의 연장은, 은퇴 후 잔여생애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는 횡단면적으로 소득계층별 재분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상 동일인 또는 동일가구 내에서 생애소득·자산의 재분배 필요성도 함께 증대시킨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연령인구와 비경제활동연령인구 사이의 재분배의 적정성과 세대간 자산 순이전에 따른 세대 간 불공평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재분배가 세대 간 순이전 또는 보조를 통한 세대간 불공평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세원을 위축
시키는 동시에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심각한 위협 요인 중 하나**



**초고령사회에서
현재와 유사한
조세재정체계로는
지속가능재정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움**

기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을 조성한 세대와 수혜한 세대 사이에 수급구조의 형평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명재(2016a)에 의하면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10.1%에서 2010년 13.5%, 2014년 15.0%로 상승하였다. 재분배 효과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주로 복지수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크다. 아울러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복지재정 수혜 계층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느리지만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작지만,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재분배 효과도 동반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추이를 놓고 볼 때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사회를 지나 멀지 않은 장래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추이는 조만간 한계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세원분포 역시 급속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매우 빠른 국가 중 하나다. 인구·가구의 절대다수가 노인들로 편입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중국에는 필연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부담하는 소득세원 비중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세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복지수혜의 주 대상인 노인인구·가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복지수혜 계층이 범위가 저소득층에서 중위층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은퇴 전 기간은 물론이고 은퇴 후 잔여생존기간 동안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 문제가 모두 중요해진다. 현재처럼 인구의 절대다수가 왕성한 경제활동연령인구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조세부담과 당해연도의 재정수혜를 직접 연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는 현재와 유사한 조세·재정체계로는 지속가능재정 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복지재정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재정부담이 요구되는데, 초고령사회에서는 젊은 연령층 인구가 축소되므로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소득세원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재분배의 영역도 소득계층 간 재분배에서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연

령기로부터 은퇴기로의 생애재분배 문제가 중요해진다. 생애주기상 모든 개인이 생애기간 동안 저소득기(주로 청년기, 노년기)와 고소득기(주로 중·장년기)를 모두 경험한다. 소득계층 간 재분배의 의미는 연령대별 재분배의 의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 재정기조 위에서 적정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의 조세부담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조세개편 방향도 좁은 세원을 대상으로 누진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보다는, 당장에는 누진도가 덜하더라도 가능한 한 넓은 세원을 가진 보편적 세원의 과세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조세·재정정책은 단기적인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적정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인구고령화·장수화 등과 같은 인구분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자원배분 및 재분배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순환구조를 정착 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야 함**

참고 문헌

- 성명재, (2011),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연구보고서 11-03,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2015)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제22권 제2호, pp. 215-236.
- 성명재, (2016a),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와의 추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pp. 1-79.
- 성명재, (2016b)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89호), pp. 47-77.
- 성명재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pp. 5-37.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MONTHLY

재정이슈포커스 ANALYSIS

재정이슈포커스는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진들이
재정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24 / 우리나라 국채 발행시장 제도변화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ANALYSIS

우리나라 국채 발행시장 제도변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¹⁾이 발행되고 있고, 국채의 약 88%를 국고채권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규모는 2016년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GDP 대비 31.6%인 516.9조 원으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채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주요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추진 중인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계획을 검토해 본다.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31.6%인
516.9조 원 규모

1. 국채시장 관련 주요 제도 변화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에서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국채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일반법인 「국채법」은 1949년 제정된 후 1979년, 1993년, 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다. 시기별 국채시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1957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제도화된 국채시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채시장의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미성숙한 발행시장과 적은 발행물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종목의 발행은 국채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국채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채발행량과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3년 만기 회사채가 지표채권 역할을 대신하였다.

【작성】

김선옥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1993년 「국채법」의 전면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행되었다.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국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채관련법을 정비하였는데, 국채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국채발행을 통폐합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하는 등 제도가 정비되었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 2008년)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수단으로 국채발행이 급증하였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고채 발행량이 1997년 2.1조 원 수준에서 1998년 12.5조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급증한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1999년 국고채전문딜러 제도²⁾가 도입됐다. 그리고 2000년에 국고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재원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고채 통합발행제도³⁾를 도입하는 등 국채시장 육성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국채발행이 급증하고 제도개선이 뒷받침 된 이 시기는 국고채가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이다. 전체 채권 잔액 대비 국고채발행 잔액 비중은 1998년말 5.6%에서 2008년말 27.7%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채권 거래량 대비 국고채 거래량 비중은 1997년 3.9%에서 2008년 51.8%로 증가하는 등 국고채시장이 채권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발행량은 2008년 52.1조 원에서 2009년 85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2009년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고, 3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수단으로 국채 발행**

1)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된다. 그리고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2)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는 국고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허가를 받은 기관(국채딜러) 중 자금력과 시장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고채에 대한 시장조성기능을 담당한다.

3) 국고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는 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종목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합발행을 통하여 종목당 발행물량이 증가되면 이는 유동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부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5년 만기 단기국고채 발행 비중을 확대하며,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고채 교환제도⁴⁾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2014년 「국채법」 개정을 통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체계에서는 국채 발행의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국고채 통합발행, 재발행 및 교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국채 원리금 지급에 대한 법률상 지출 의무도 명확히 하였다.

〈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채시장 주요 제도 변화

일시	내용	일시	내용
'98. 9	국채입찰시 한은망(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07. 3	물가연동국고채 최초 발행
'99. 1	국채발행 정례화	'08. 2	10년 만기 장기국채선물시장 개설
'99. 3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09. 5	국고채 교환제도 시행
'99. 7	국고채전문딜러 (PD: Primary Dealer)제도 도입	'11. 3	PD제도 개편 (Preliminary PD제도 도입)
'00. 1	양곡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에 통합	'12. 3	PD와 PPD 승강제 실시
'00. 5	국고채 통합발행 (Fungible Issue) 제도 도입	'12. 9	3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도입
'00. 8	국채낙찰방식을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 변경	'13. 1	지표채권 장기화 추진방침 공표 (5년물 → 10년물)
'00.10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	'13. 6	국고채 금리체계 개편(소수 2자리 → 3자리, 표면금리 12.5bp 단위 결정)
'00.12	조기상환제도(Buy-Back) 도입	'14. 12	국채법 전부 개정 (전자·통합발행, 조기상환 등 법령 정비, '15.7월 시행)
'03. 3	국고채 통합발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15. 1	20·30년물·물가채 통합발행기간 조정(2년 → 1년)
'04. 5	장기국채시장 육성방안 발표 (지표채권 장기화, 3년물 → 5년물)	'15. 7	개정 국채법('14.12.30 전부개정) 시행
'04. 6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5. 12	국고채 발행일전 거래제도 도입
'06. 1	20년 만기 초장기국채 최초 발행	'16. 10	5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도입
'06. 3	원금이자분리채권 (STRIPS)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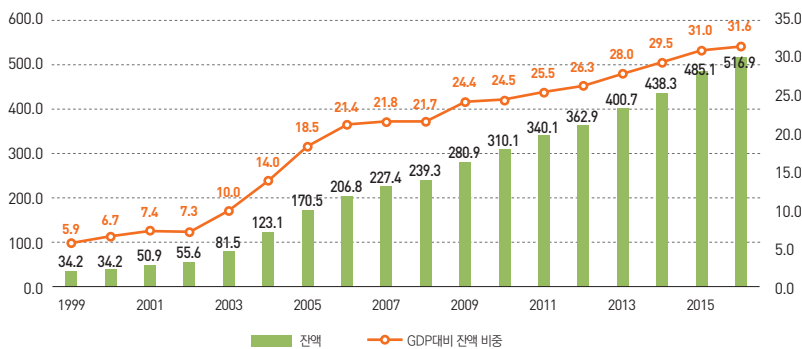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2017), 「국채 2016」

4) 국고채 교환(Conversion offer)제도는 정부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와 교환하는 제도로 2009년 5월에 도입되었다.

국고채통합발행,
조기상환제도, 월별균등
발행 등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⁵⁾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국고채발행 잔액은 1999년 GDP 대비 5.9%인 34.2조 원에서 2016년에 GDP 대비 31.6%인 516.9조 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림 1. GDP 대비 국고채잔액 규모 추이 (조 원,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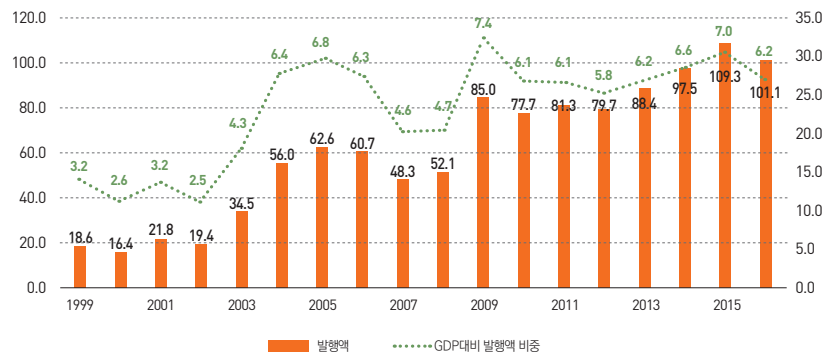
1999년 18.6조 원에서
2015년 최초로
연간 100조 원 이상
발행하였고 2016년에
101.1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

국고채 발행액으로는 1999년 18.6조 원에서 2015년 최초로 연간 100조 원 이상 발행하였고 2016년에 101.1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외로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3년과 2008년 이후,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목적의 재정수요 증가가 필요했으나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으로 세수부족을 충당하게 됐고, 이로 인하여 국고채 발행액이 급증하였다.

5) 우리나라 국채는 국고채가 약 88%를 차지(2017년 발행잔액 기준으로 국채 619조 원 중 548조 원이 국고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국고채 위주로 기술하였다.



그림 2. GDP 대비 국고채발행(시장) 규모 추이 (조 원, %)



※주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던 2013년과 메르스가 발병하였던 2015년에는 각각 17.3조 원, 12조 원의 추경편성에 따른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으로 물량이 증가하였다.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년 국채시장의
관리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2. 국채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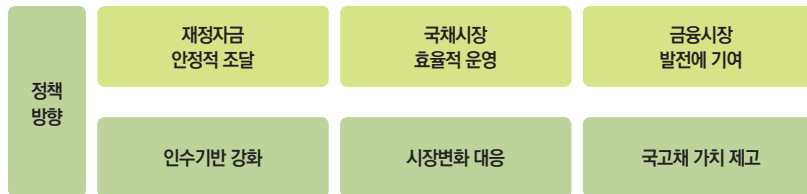
2016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인수기반을 강화하여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둘째, 시장변화 대응을 통해 국채시장의 효율적 운영, 셋째, 시장에서 국고채 중요도를 제고하여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본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가지 기본방향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수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고채전문딜러(PD)의 핵심역량 제고 및 경쟁 환경 조성,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정비했다. 우선 PD의 기본 업무인 ‘인수’ 항목의 평가를 강화하고 PD요건 정비⁶⁾, 그리고 상위권에 집중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하위권 PD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발행계획 공고, 사이트 통합, 용어정비 등 정보공유·유통 강화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6) 채무요건을 PPD기준으로 통일하고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기준과 연동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PPD기준은 (BIS비율) 국내 8%, 외은 10%, (자기자본) 국내 3조 원, 외은 3천억 원이다.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차환리스크 관리, 시장소통강화, 시장동향 집중 모니터링등을 검토했다. 차환리스크 관리는 연물별로 관리하던 발행비중을 기간별로 그룹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50년물 추가발행, 조기상환·교환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했다.

그림 3. 2017년도 국고채 관리 기본방향



※주 : 정부는 매년 말 차년도의 국고채 관리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본 내용은 2017년도 관리방향으로 2017년도 말에 발표될 2018년도 관리방향과 다를 수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2016), '2017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국고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채 RP거래 및 물가채 활성화, 헤지(hedge)수단 제공, 국공채 관리 효율화 등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채관련 사이트 통합, 국공채 관리 효율화 방안 등 중·장기 과제 검토를 통하여, 국채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채 상품성 제고를 위해 국채 종류별 발행현황과 관련 제도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국공채 관리를 도모하고 공사채 발행·관리 효율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공사채 유동성 제고 및 발행비용 경감 등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말 국고채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국채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15), 「2015 경제백서」
- 기획재정부(2016), 「국채 2016」
- 기획재정부(2016), '2017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 한국거래소(2015), 「한국의 채권시장」
- 기획재정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www.ktbinfo.or.kr)
- 기획재정부 국채시장(ktb.mosf.go.kr)
- 국제금융센터(HYPERLINK "<http://www.kcif.or.kr>" www.kcif.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국채는 「국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
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

국채 발행절차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채 발행은 「국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표〉 국채 발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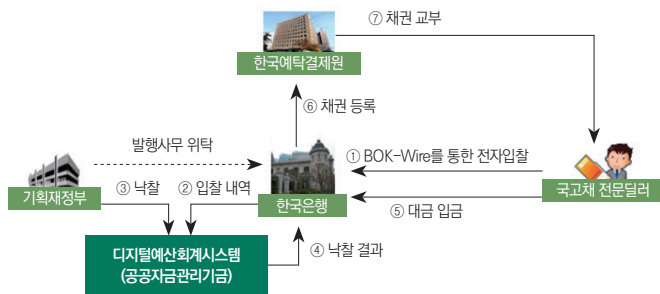
① 국채발행 계획안 작성 및 조정	•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에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국채발행계획안 작성
② 국무회의 심의	•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③ 국회제출	•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④ 국회 심의의결	• 국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후 정부에 통보
⑤ 국회발행계획 수립	• 정부는 국채발행일정 등 계획을 수립
⑥ 국채발행	• 국채발행 계획에 따라 국채발행 대행기관을 통해 발행
⑦ 발행대금 세입조치	• 판매 또는 인수된 국채의 발행대금은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정에 입금

자료 : 한국거래소(2015), 「한국의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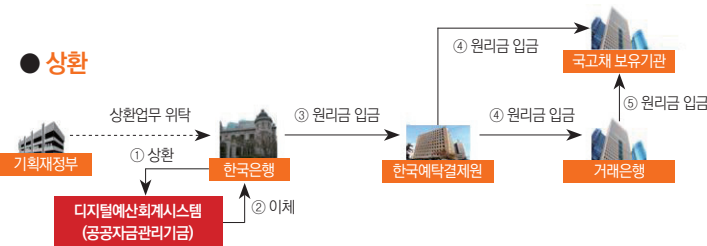
국채 발행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채 응찰 및 낙찰 정보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고채 발행등록 및 예탁 정보는 BOK-Wire+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SAFE+)간 연계를 통해 자동 송수신 된다.

7) 발행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있는데, 국고채의 발행, 상환, 교환, 원리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공고, 입찰, 등록, 상장신청 등을 수행한다.

● 입찰낙찰 (발행조기상환·국채교환)



● 상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은 국가의
채권채무 관련법에
의거하여 채권 및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기능을
제공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국가의 채권 채무 관련법에 의거하여 채권 및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디브레인 도입 이전, 채권 및 채무 현액파악은 결산을 위해 연 1회만 파악하고, 일부 채권의 경우 발행 후 실시간 등록이 되지 않는 등 중장기적 위험관리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2007년 이후 디브레인이 운영되면서 수입 및 자금관리 업무시 발생하는 채권이 자동적으로 등록되고, 월별로 채권 및 채무 현액을 파악하여 담당자의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중장기 위험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dBrain의 채무시스템



**박황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phsso@molit.go.kr

페가드레일을 활용한 적사함 자체 제작

- 시간 : 2017년 9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천 명 이상이고, 부상자수도 약 35만 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하위권 수준이다.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므로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은 국민 안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지역마다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버려지는 페가드레일을 활용하여 모래주머니를 보관하는 적사함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기존 행정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2017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재정절약 우수자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박황수 과장을 찾아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행까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박황수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전라북도 서남권의 9개 시·군 관내 국도 547km의 국도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관광지를 찾는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1등급 골재사용으로 포장 품질개선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브구간의 선형개선 및 낙석위험 지역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일 연구원
doylek@kpfis.kr

- 유지·보수 담당 구역 : 전라북도 5개 시, 4개 군* 및 98개 읍면
- * 익산·군산·김제·전주·정읍시, 부안·고창·완주·진안군(일부)
- 국도 : 11개 노선 547.4km(2차로: 107km, 4차로 이상: 440.4km)

Q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폐가드레일을 활용한 제설용 적사함을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는 폭설이나 강설 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단절 상황에 대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직접 모래를 살포할 수 있도록 취약구간에 모래주머니를 보관할 수 있는 적사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적사함은 지면에 설치되어 있어 필요 시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덮개가 결빙될 경우 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갓길의 L형 측구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 제설차량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갓길로 밀어내는 경우에는 밀어낸 눈이 적사함을 덮어 보이지 않고 결빙되는 경우가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무등급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체작업은 많은 폐가드레일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무등급 방호울타리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맞지 않은 방호울타리로서, 과거에는 별도의 테스트 없이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등급 방호울타리를 교체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폐가드레일이 값싼 고철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고철로만 폐기되는 폐가드레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기존 적사함을 대체할 시설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철로 폐기되는
폐가드레일을 제설용
적사함으로 개발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그림 1. 기존 적사함과 자체 제작한 적사함



(기존 적사함)



(자체 제작 적사함)

Q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A. 적사함을 제작하는 과정은 디자인 개발부터 절단, 용접, 도색 및 고정 작업 등 공정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폐가드레일을 사무소로 반입받아 직접 절단 후 몇 가지 샘플을 시범적으로 제작하고 설치하는 등의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편리함을 고려한 설치, 시인성을 높이는 도색, 안정적인 고정 방법을 찾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직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 2. 폐가드레일을 활용한 적사함 제작 과정



(절단 및 용접 작업)



(도색 작업)



(적사함 제작 완료)

폐가드레일로 만든 적사함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편리성, 내구성 등의 장점이 존재

Q 폐가드레일을 활용한 제품이 기존의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자체 제작한 적사함은 갓길 바깥쪽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고장 등으로 차량이 갓길에 비상 정차하는 경우 방해받지 않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동절기에 적사함을 설치하고 이후 거두어들이던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닥 또는 가드레일 뒤에 설치된 제품은 필요 시 모래주머니를 꺼내 쓰기에 불편하지만, 자체 제작한 적사함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필요 시 모래주머니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기성품과 비교하여 내구성이 좋고 반영구적이며, 동절기 이외에 적사함이 사용되지 않는 시기에는 화분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어 아름다운 국토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 3. 자체 제작 적사함의 설치 모습



Q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적사함 자체 제작은 무등급 방호울타리 교체 시 발생한 폐가드레일을 재 활용한 사례로서, 우리 사무소는 관내 국도에 총 600개를 설치하여 총 154.2백만 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일반국도 전 구간(L=524km)에 3,000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향후 약 7억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도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 및 타 지역으로 확대 보급될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싶은 사업 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사무소는 도로 안전성 증대로 도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6년 우리사무소 최초 포장도 보수공사 시 1등급의 아스콘을 사용하였으며, 1등급 골재 사용결과 보고서를 타기관과 공유하여 우리 부 일반국도의 포장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 보수 시 기존의 포대아스콘을 채워 다지는 방식에서 자체 제작한 포트홀 보수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함에 따라 '17년 국토교통부 예산성과금 대상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타 기관 및 지역으로 설치가 확대될 경우 예산절감의 파급효과 기대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알아보기

2017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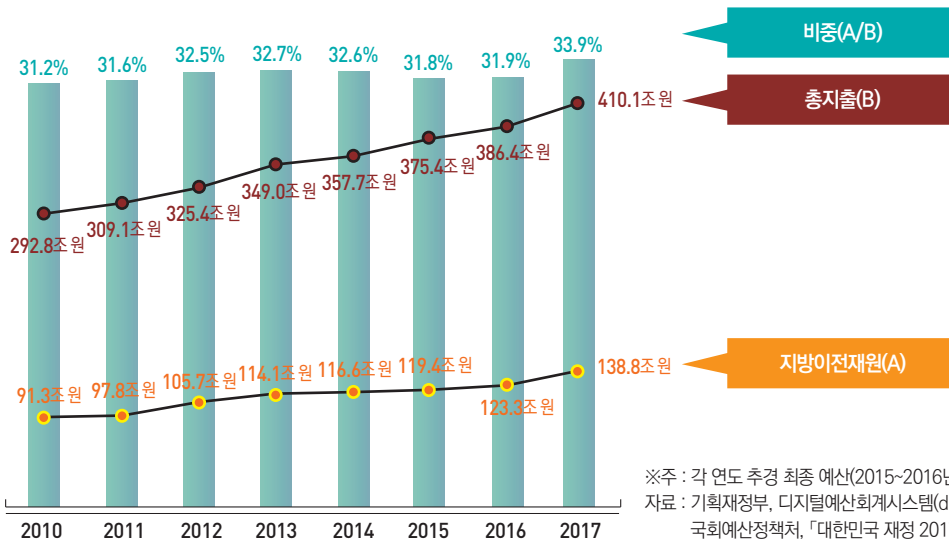
(2017년 추경 기준)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추이

: 201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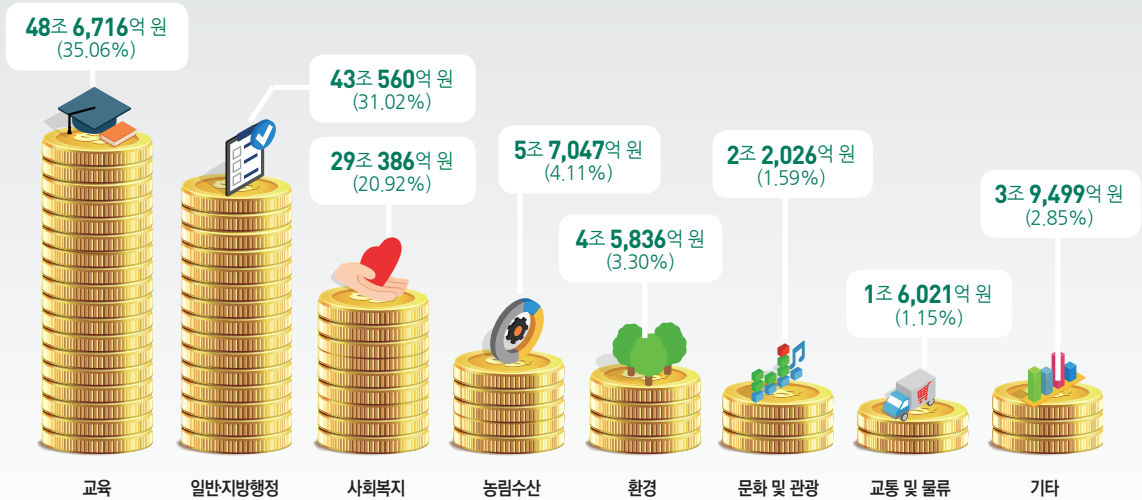
※주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합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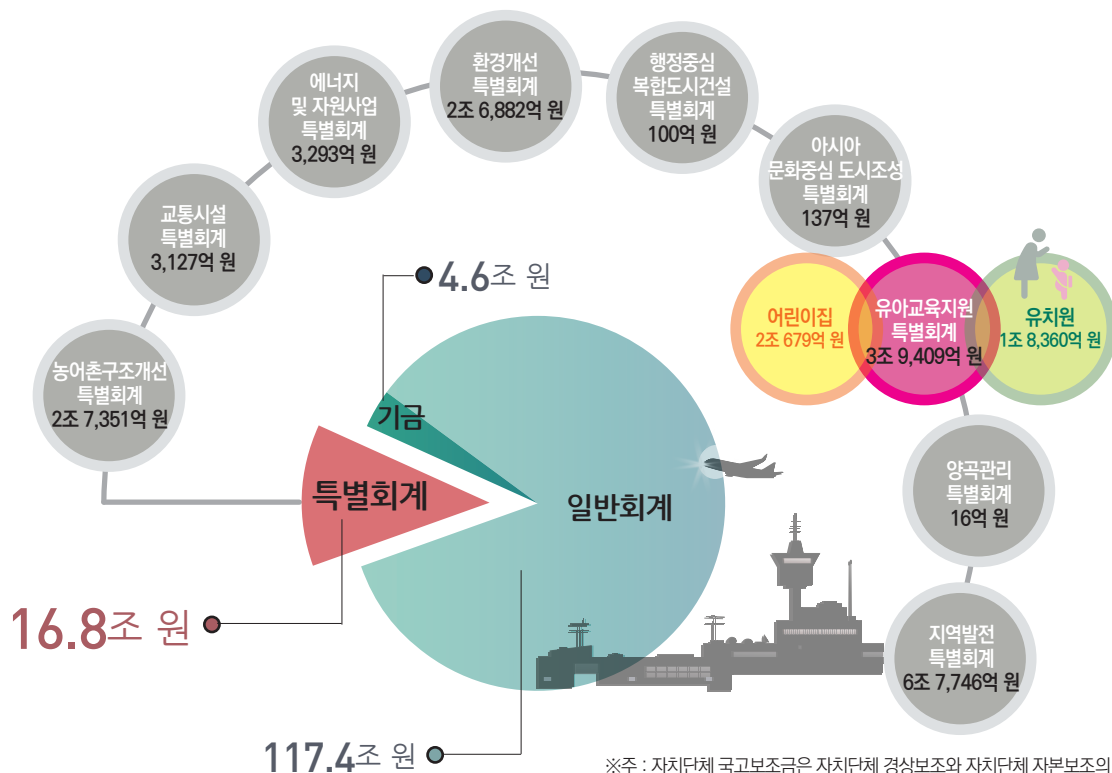
※주 : 각 연도 추경 최종 예산(2015~2016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을 토대로 작성, 2017. 3.

2017년도 분야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지방이전재원 총규모 대비, %)



2017년도 회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주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합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지방이전재원이란?

지방이전재원¹⁾이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교육 기관 포함)에 주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지방이전재원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²⁾)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교부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규모, 대상 등이 결정된다.

지방이전재원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게 이전하는 자원

〈표 1〉 지방이전재원 항목별 특징 비교

구분	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부금	
법적 근거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 등
목적	지자체 재원보장 재정불균형 완화	교육의 균형발전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	특정사업 지원
종류	보통·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보통특별교부세	자치단체 교부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재원	- 보통·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의 일부	- 교육세의 일부 - 일반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계상
재원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 - 특별·소방안전교부세: 용도지정	- 보통교부세: 일반재원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	- 목적사업 (유아보육료)에 한정	- 목적사업에 한정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김상기 연구원
sgkim@kpfis.kr

조현희 연구원
hyunheecho@kpfis.kr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표 1-53] 재구성.

- 1) 지방이전재원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2)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비용지원을 말한다.

2. 분야별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48.7조 원(3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43.1조 원(31.0%)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9.0조 원(20.9%)으로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방이전재원 예산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부금을 제외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만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로, 노인복지를 위해 8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와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위해 각각 5조 원과 4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농림수산 분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1.1조 원과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 1조 원 등을 보조하고 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1.3조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 2017년 분야별 지방이전재원

(단위 : 조 원, %)

구분	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금		
일반·지방행정	42.4			0.6(1.3)	43.1(31.0)
공공질서 및 안전				0.8(1.8)	0.8(0.6)
통일외교				0.01(0.0)	0.01(0.0)
국방				0.01(0.0)	0.01(0.0)
교육		44.7	3.9	0.0(0.0)	48.7(35.1)
문화및관광				2.2(4.6)	2.2(1.6)
환경				4.6(9.6)	4.6(3.3)
사회복지				29.0(60.9)	29.0(20.9)
보건				1.1(2.3)	1.1(0.8)
농림수산				5.7(12.0)	5.7(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7(1.5)	0.7(0.5)
교통 및 물류				1.6(3.4)	1.6(1.2)
통신				0.0(0.0)	0.0(0.0)
국토및지역개발				1.3(2.7)	1.3(0.9)
과학기술				0.0(0.1)	0.0(0.0)
계	42.4	44.7	3.9	47.7(100)	138.8(1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추경기준), 2017. 7. 25.

분야별로는 교육분야가
48.7조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3. 소관별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을 소관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48.8조 원(3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43.7조 원(31.5%)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 분야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으로 9천억 원을,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6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있다.

〈표 3〉 2017년 소관별 지방이전재원

(단위 : 조 원, %)

구분	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금		
교육부		44.7	3.9	0.1(0.3)	48.8(35.2)
행정안전부	42.4			1.3(2.7)	43.7(31.5)
보건복지부				27.7(58.0)	27.7(19.9)
환경부				4.5(9.4)	4.5(3.2)
농림축산식품부				4.1(8.6)	4.1(3.0)
국토교통부				4.1(8.5)	4.1(2.9)
문화체육관광부				1.8(3.8)	1.8(1.3)
산림청				1.0(2.1)	1.0(0.7)
해양수산부				0.7(1.4)	0.7(0.5)
산업통상자원부				0.6(1.4)	0.6(0.5)
여성가족부				0.5(1.0)	0.5(0.4)
고용노동부				0.2(0.5)	0.2(0.2)
기획재정부				0.2(0.5)	0.2(0.2)
농촌진흥청				0.2(0.4)	0.2(0.1)
기타				0.2(0.4)	0.2(0.1)
계	42.4	44.7	3.9	47.7(100)	138.8(100)

※주1 : 행정안전부는 구 행정자치부와 구 국민안전처의 합산임

※주2 : ()안은 비중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추경 기준), 2017. 7. 25.

소관별로는 교육부가
48.8조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4. 회계별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7.4조 원(8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6.8조 원(12.1%)을, 기금은 4.6조 원(3.3%)을 차지하고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4조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표 4〉 2017년 회계별 지방이전재원

(단위 : 조 원, %)

구분	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금		
일반회계	42.4	44.7		30.2(63.3)	117.4(84.6)
특별회계			3.9	12.9(27.0)	16.8(12.1)
기금				4.6(9.7)	4.6(3.3)
계	42.4	44.7	3.9	47.7(100)	138.8(1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추경 기준), 2017. 7. 25.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이전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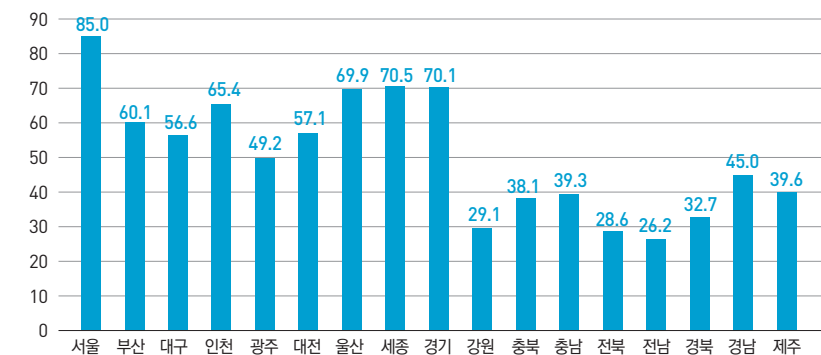
Q1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중앙정부에 비해 취약하며, 지방정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경제구조와 재정력이 다르고, 또한 중앙정부 사업의 집행 역할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재원도 포함합니다.

Q2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방정부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재정 조정이 없다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림 1>의 재정자립도는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 간 재정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확보한 조세수입을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지원

그림 1.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당초 예산)



※주: 재정자립도(%) = (자체 수입 / 예산 규모)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함으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평적 공정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생산과 공급하도록 위임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지방정부 간 서로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지방이전재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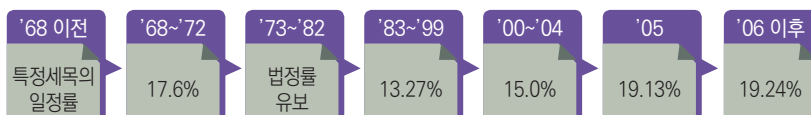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합니다. 지방일반재정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이 있습니다.

Q3.1 지방교부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재량적 재정사용이 가능한 보통교부세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세로 구성됩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¹⁾의 수입예정액의 19.24%(법정률)로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책정됩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983년 이후 13.27%로 운영되다가 2000년 15.0%로 인상되었고, 2005년에는 19.13%로 인상,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9.24%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림 2. 지방교부세 법정률 변화



1) 이하 교부 기준인 내국세는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계상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신설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산정·교부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Q3.2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특정 목적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예산과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정상사업을 보조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구분합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주로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보조금은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부처 사업 간 연계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범위를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운영

Q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59년에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에 도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하여 1971년 동법이 제정된 이후 197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중 국세분입니다. 법정률은 2000년에는 11.8%이었지만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방교부세처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20.27% 중 96%와 교육세로 구성하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20.27% 중 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Q3.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은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17년 신설되었습니다. 동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누리과정지원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동안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로, 2017년 예산은 3.9조 원으로 이 중 유치원에 1조 8,360억 원, 어린이집에 2조 67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의 일부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7년 재원은 교육세에서 3조 809억 원, 나머지 8,60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합니다.

Q4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방재정이전재원은 지방재정조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연도별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2010년 91.3조 원에서부터 2017년 138.8조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5.6%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4.6%)에 비해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이전재원은
138.8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33.9%

〈표 1〉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추이

(단위 : 조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A)	91.3	97.8	105.7	114.1	116.6	119.4	123.3	138.8	5.6
정부 총지출(B)	292.8	309.1	325.4	349.0	357.7	375.4	386.4	410.1	4.6
비중(A/B)	31.2	31.6	32.5	32.7	32.6	31.8	31.9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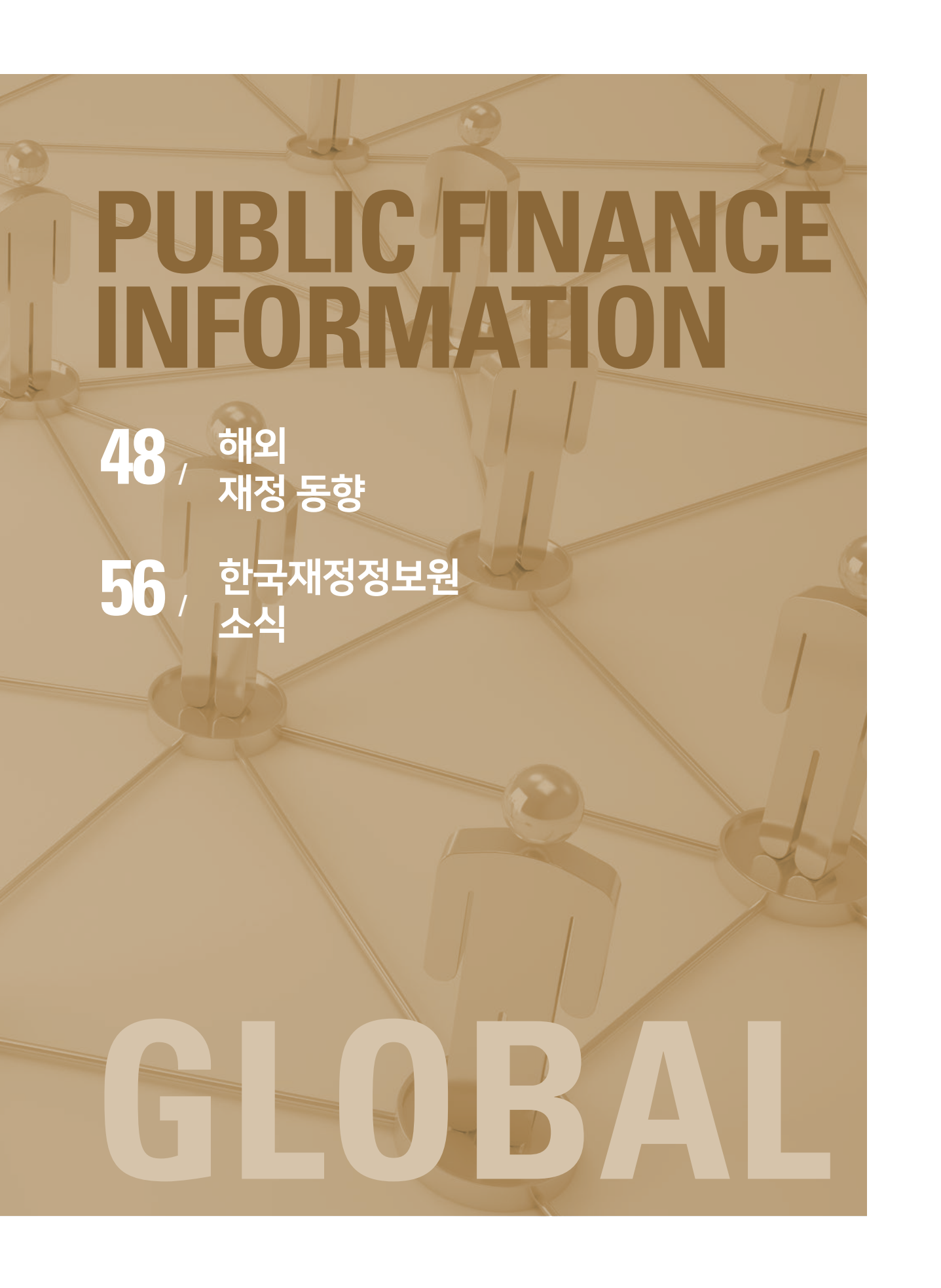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48 / 해외
재정 동향

5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EU집행위원회, 2017년 안정화 프로그램 및 2018년 유로지역 재정정책 평가보고서 발간

- EC¹⁾, An Overview of the 2017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 and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for 2018 (2017. 7. 28.)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 SCP)〉

EU회원국은 매년 4월까지 EU집행위원회에 장기적인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중기재정목표(Medium Term Objectives)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계획은 유로화 채택 여부에 따라 EMU(경제통화동맹: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회원국은 Stability programme, 비참가 회원국은 Convergence programme으로 구분됨

● 2016년 EU회원국 재정운용 결과

- ▶ 경기여건의 개선으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했으며, 구조적 재정수지²⁾는 소폭 개선되었음
 -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015년 2.3%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고, 구조적 재정수지는 0.3% 감소하여 2016년 1.4%를 기록
- ▶ GDP대비 재정수입 비중은 변동없으나 GDP대비 기초재정지출(primary expenditure)³⁾의 비중은 0.5%p 감소
- ▶ GDP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 88%에서 2016년 84%로 감소함
- ▶ 2016년 안정화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재정수지는 EU와 유로지역 모두 개선됨(유로지역은 0.3%p, EU는 0.4%p 개선)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강나연 연구원
nykang@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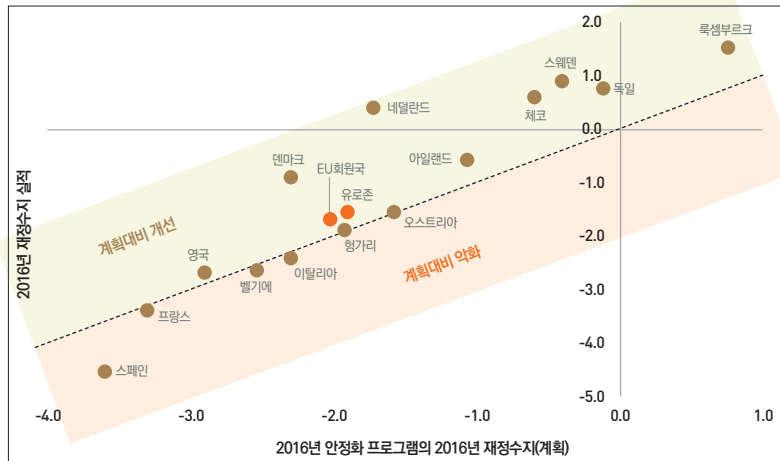
1)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2) 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말하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자산, 주택 시장 등의 경기 순환 효과를 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3) 정부지출 중 이자지급비용을 제외한 지출

- ▶ 구조적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2015년 프로그램과 비교해 2016년 실제 EU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로지역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유지됨

그림 1. 2016년 안정화 프로그램 계획 재정수지 대비 실적



※ Source : European Commission 2017 spring forecast, 2016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 2017년 안정화 프로그램 및 중기계획

- ▶ 2017년 안정수렴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재정적자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함
- ▶ EU 회원국은 구조적 재정수지를 2017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2018~2020년 재정 긴축 기조로 전환
- ▶ 회원국 다수는 안정·수렴 프로그램 기간인 3년 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재정을 소폭 확대할 전망
- ▶ 채무비율은 2015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로지역은 GDP의 83%, EU는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기초재정흑자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⁴⁾가 EU 및 유로지역의 채무비율 감소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4)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채무비율의 감소는 물론 명목GDP성장률이 정부발행채무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 실질 채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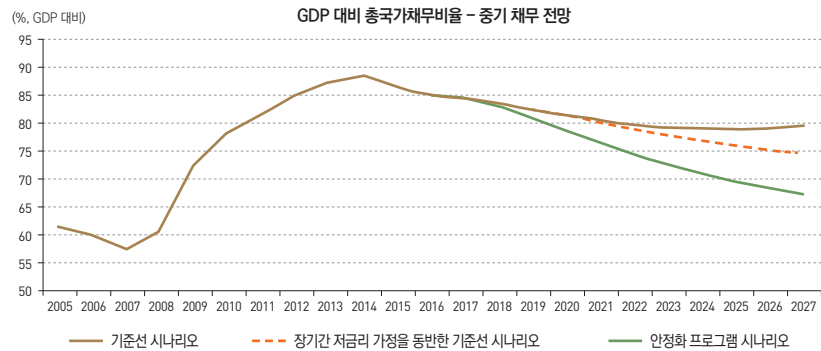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 재정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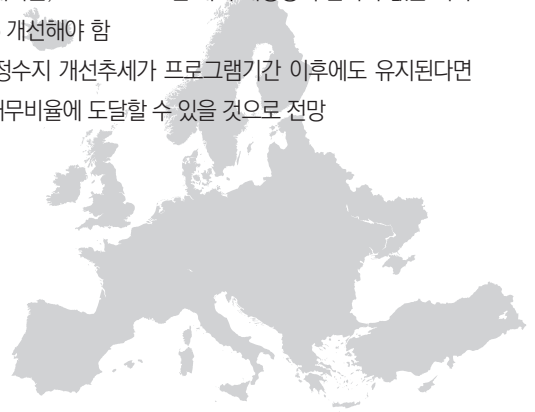
- ▶ 고령화의 영향, 거시경제 시나리오, 재정전망 및 재정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함
 - 기준선 시나리오 : 2018년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율이 EC 2017년 봄 전망(Commission 2017 Spring forecast)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의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 안정화 프로그램 시나리오 : 재정건전화를 위해 안정화 프로그램에 명시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이 재정계획이 프로그램 종료시점까지 꾸준히 지속된다는 시나리오
- ▶ 고령화 비용을 고려한 국가 채무비율은,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80% 이지만 SCPs의 재정계획 반영시 67.3%로 하락

그림 2. EU의 중기 채무전망



※ Source: 2017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European Commission 2017 spring forecast

- ▶ 현재의 재정여력이 2018년까지 지속되고 202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세의 긍정적 선순환 효과가 지속된다면 국가채무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저금리시대가 더 길어질 경우 채무는 2027년 GDP의 75%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며 이는 재정정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5%p 더 낮은 수치임
- ▶ 중장기 지속가능성 위기 : 재정정책의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하에서 2031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2023년 내에 재정정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보다 구조적 재정수지를 2.1%p 개선해야 함
- ▶ 현재의 재정개혁 기초와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추세가 프로그램기간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2030년까지 GDP의 60% 수준의 채무비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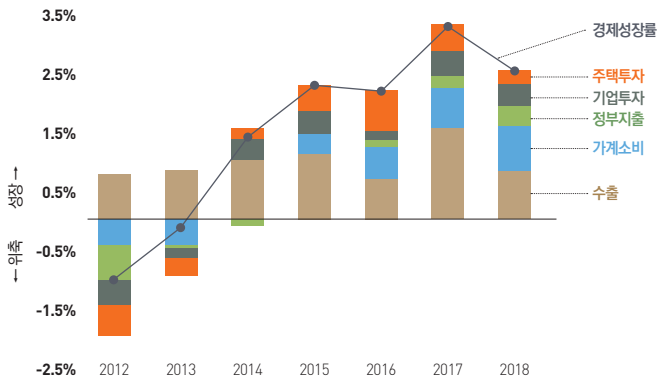
네덜란드, 2018년 예산안 보고서 발간

- Ministry of Finance of Netherlands⁵⁾, Summary of 2018 Budget Memorandum (2017. 9. 19.)

● 경제전망

- ▶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 전망
- ▶ 국내소비, 수출, 정부지출, 투자가 증가하여 네덜란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투자개선 : 총생산 증가와 생산자심리 개선으로 기업투자 증가 예상
 - 노동시장 : 예상보다 긍정적이며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노동시장 미참여 잠재노동력 때문에 노동 공급부족이 실질임금과 구매력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시장 :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액이 주택가격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2012년 36%에서 2017년 15%로 감소하여 가계 건전성 개선
- ▶ 대외 경제 요인 : 유럽 경기와 글로벌 경기 호조에 힘입어 네덜란드 경제가 회복될 것
- ▶ 하방 위험 : 브렉시트 여파, 테러리즘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무역장벽 증가, 저금리 기조 등이 있음

그림 3. 지출부문별 경제성장 기여율



● 재정여건

- ▶ 경제성장세는 재정수지를 개선,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 2018년 재정흑자는 GDP의 0.8%까지 늘어날 전망

5) 네덜란드 재무부



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해외 재정 동향

-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따른 세입증가, 저금리로 인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경감으로 재정수지 전망은 2012년보다 긍정적
- ▶ 재정수지의 개선으로 정부채무는 GDP의 54.4%수준으로 감소하여, 유럽통합동맹의 채무상한인 60%를 하회하게 되나 경제위기 이전 채무비율인 45%보다는 여전히 높음

그림 4.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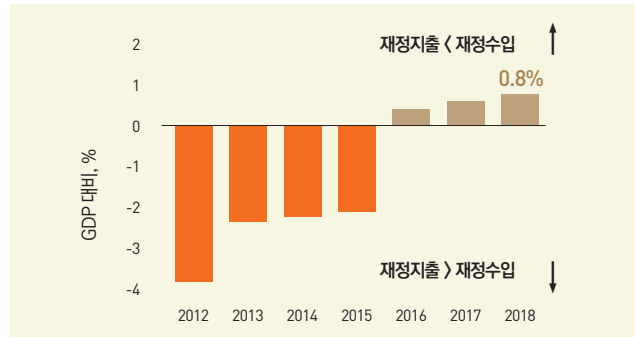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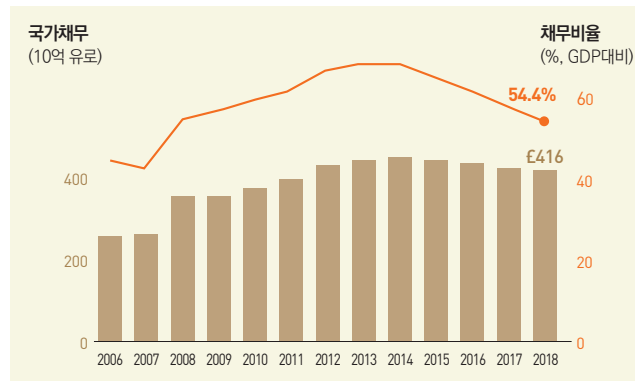


그림 5. 국가채무



● 고령화와 미래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재정여력

- ▶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미래 위기 및 고령화 비용에 대비 가능한 수준
- ▶ 충분한 재정수지, 적정수준의 국가채무는 위기시,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채무를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함
- ▶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연금과 보건의로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함
- ▶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상태 악화 이후, 2012년 결의된 연합정부합의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켰고, 국가연금 시스템, 헬스케어 및 주택시장(모기지 이자 공제제도의 축소) 등의 개혁도 부분적으로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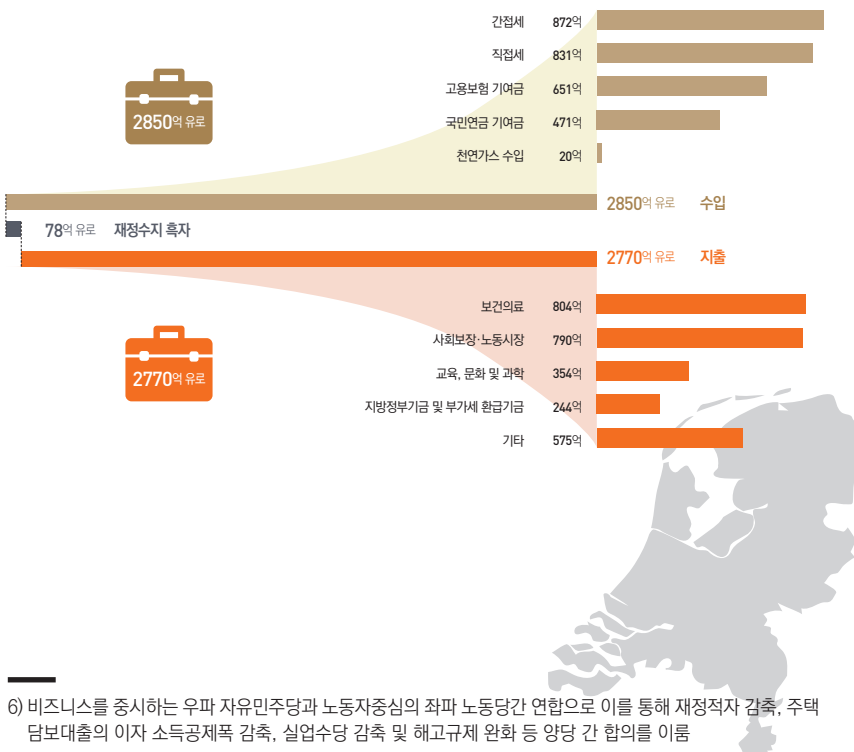
● 2018년 예산의 특징

- ▶ 재정수입 2,850억 유로 중 간접세가 87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직접세(831억 유로), 고용보험 기여금(651억 유로)이 잇고 있음
- ▶ 재정지출은 총 2,770억 유로로 보건의료(804억 유로) 분야와 사회보장·노동시장(790억 유로) 분야에 주로 배정됨
- ▶ 정부는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개선하고 초등교육, 국방, 정부집행기관 예산 및 요양원 돌봄서비스에 재정을 주로 배정함
- ▶ 취약계층의 구매력 개선을 위해 근로자, 수당 수급자, 연금수급자의 구매력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전망

그림 6. 2018년 재정 중점사업



그림 7. 2018년 정부 수입 및 지출



6) 비즈니스를 중시하는 우파 자유민주당과 노동자중심의 좌파 노동당간 연합으로 이를 통해 재정적자 감축,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소득공제폭 감축, 실업수당 감축 및 해고규제 완화 등 양당 간 합의를 이룸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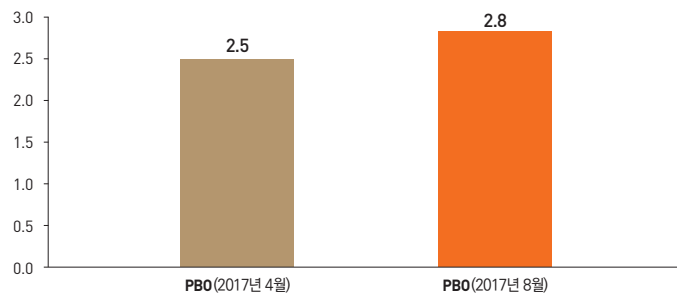
캐나다, 경제 및 재정 모니터 발표

- PBO of Canada⁷⁾, Economic and Fiscal Monitor (2017. 8. 17)

● 2017년 GDP 전망

- ▶ PBO는 2017년 캐나다 실질GDP가 4월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하여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 전망의 상향조정은 올해 상반기 주택투자자와 기계장치투자, 가계지출의 강한 성장을 반영한 것임
- ▶ 캐나다 중앙은행은 10월 정책금리를 0.25%p 높일 것으로 전망함
- ▶ 2017년 명목GDP는 2.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50억 달러, 2017년 예산안 전망보다 340억 달러 높은 수치임

그림 8. 2017년 실질GDP성장률 전망 (단위 : %)



※Sources : Finance Canada and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 2016/17년 및 2017/18년의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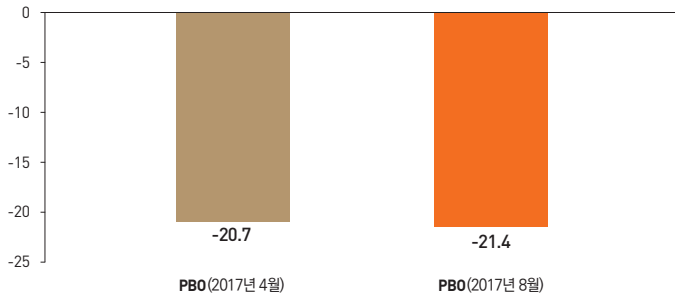
- ▶ PBO는 지난 4월 전망보다 7억 달러 증가, 2017년 정부 예산안보다 21억 달러 낮춰 수정하여 2016/17년 재정적자를 214억 달러로 예상
- ▶ 5월말 정부 재정데이터에 따르면 2016/17년 말 연방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수입은 4월 PBO전망보다 낮았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을 26억 달러 적게 추산, 적자폭 확대가 예상됨
- ▶ 2016/17년 총지출 전망은 4월 전망보다 19억 달러 적으며 그중 프로그램지출은 24억 달러 감소하고,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용은 5억 달러 늘어남
- ▶ 지출 감소 대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 캐나다(Infrastructure Canada)⁸⁾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의 감액으로 발생

7)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캐나다 의회예산처

8) 캐나다 연방정부 기관으로 캐나다 내 공공인프라 업무를 맡고 있음

- ▶ 지방예산에서도 새로운 사회기반시설투자 지출의 성장세가 뚜렷하며, 2017/18년까지 연방 사회기반시설 펀드(federal infrastructure money)에서 지방정부 인프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9. 2016/17년 재정수지 (단위 : 10억 달러)



※Sources : Finance Canada and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 ▶ 2017/18년 재정적자는 248억 달러로 4월 전망인 246억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전망 수정
- 재정수입 전망은 2017/18년 명목 GDP 전망에 따라 2억 달러 소폭 증액 수정함
 - 지출전망은 아동수당이 4억 달러 증가, 노인수당은 3억 달러 감소 등 소폭 수정
- ▶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은 3억 달러 높여 전망을 수정함

〈표〉 2016/17년 추정치 및 2017/18년의 전망치

(단위 : 10억 달러)	추정치	전망치	2017년 4월 전망과 차이	
	2016~17	2017~18	2016~17	2017~18
총수입	294.5	304.8	-2.6	0.2
지출				
프로그램 지출	291.6	304.6	-2.4	0.1
이자 지출	24.4	25.0	0.5	0.3
총지출	315.9	329.6	-1.9	0.4
재정수지	-21.4	-24.8	-0.7	-0.3

※Sources :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해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제표준(ISO 20000) 인증 획득

-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IT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획득

※ ISO 20000은 IT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립한 국제표준 규격임

- 이번 인증 획득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국제표준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한국재정정보원, 국유재산 관리 우수기관 선정

- 한국재정정보원은 10월 12일 캄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국유재산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
-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재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음
-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KP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스마트오피스 우수사례로 선정

- 9월 15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환경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스마트오피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충청남도, 거제시청 등과 함께 베스트 5에 선정
- 특히, 클라우드, 와이어리스, 생체인식 등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파티션·칸막이 제거, 고정좌석제 폐지 등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
- 한국재정정보원은 향후에도 IT 기반의 공간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할 계획



제주 지역 dBrain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원거리 사용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예산편성, 수입지출, 국유재산/물품 등 9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총 450명의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
-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회 확대 및 실습교육 과정 편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



네팔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 네팔 재무부 외 주요 부처 고위급 및 관리자급 공무원 사절단은 원조·차관자금의 효율적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일환으로 9월 17일 재정정보원을 방문
- 한국재정정보원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반영된 dBrain시스템을 소개하고 주요 기능을 시연하였으며, 재정정보원의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하고 열린 정부의 시작!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로 국고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보조사업 맞춤형 검색
- 보조사업자 공모현황에 대한 통합 검색,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통계공개
-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채널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보조사업 7단계(신청/집행/사후)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통합예치, 지출증빙자료 검증 후 실시간 집행
- 보조사업 전 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 정산보고 자동화 등 수작업 대폭 감소
- 행정관청 방문없이 보조사업 응모 가능
- 자료분석으로 과학적 보조금 정책지원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www.gosims.go.kr)이 국민과 함께 합니다

※ e나라도움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670-9595(국고국고)

월간
**나라
재정** 2017년 10월호 통권 제10호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주 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 화 02-6908-8200
팩 스 02-6312-8959
홈 페이지 www.kpfis.or.kr

발 행 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 집 위 원 강영규(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 집 간 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